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5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50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26 선고 2019나1127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고흥군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소247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20. 7. 9.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26. 선고 2019나11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별지